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가유산기본법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1) 교류 협력사업 지원 대상, 경비지원 절차 등

나. 세계유산등을 유지·관리하고,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3조)

1) 세계유산등의 현황 및 보존상태에 대한 정기적 점검활동 실시 등

다. 국가유산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1)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실적, 결산서 제출 등

라.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1) 국가유산진흥원 유사명칭 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략

라. 기 타 : 생략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 ①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 교류 협력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북한 국가유산 공동조사·연구 및 수리
2. 남북한 국가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3. 국가유산분야 관계 전문가 인적 교류
4.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에 북한의 국가유산 등재 지원
5. 남북한 국가유산 교류 협력사업의 홍보
6. 그 밖에 남북한 국가유산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1조에 따라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안에 사업실적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세계유산등의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세계유산등(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을 유지·관리하고,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등의 현황 및 보존상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점검(「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정기보고 의무 이행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에 필요한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

려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총액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9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②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한다.

별표 1 제3호너. 시설의 종류란 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국가유산의 복원과 국가유산관리용 건축물

별표 3 제3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33. 종교시설 또는 국가유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별표 3 제33호나목 본문 중 “문화재 및”을 “국가유산 및”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④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조사 및 보호조치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9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로 한다.

⑥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3항제3호 중 “자연환경훼손·문화재훼손”을 “자연환경훼손·「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훼손”으로 한다.

⑦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6호 중 “문화재로”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로 한다.

제87조제4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⑧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6호 을종란 차목 중 “문화재 비파괴검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비파괴검사”로, “문화재 연구”를 “국가유산 연구”로 한다.

⑨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5 급 이 상의 공채의 제2차의 선택의 행정의 문화홍보란 중 “문화재관리학”을 “국가유산관리학”으로 하고, 같은 란의 경채 · 전직 · 승진의 제2차의 필수의 행정의 문화홍보란 중 “문화재관리학”을 “국가유산관리학”으로 하며, 같은 표 6 급 및 7 급의 경채 · 전직 · 승진의 제2차의 선택의 행정의 문화홍보란 중 “문화재관리학”을 “국가유산관리학”으로 하고, 같은 표 8 급 및 9 급의 경채 · 전직 · 승진의 제2차의 선택의 행정의 문화홍보란 중 “문화재관리학”을 “국가유산관리학”으로 한다.

⑩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1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⑫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문화재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을 “(국가유산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국유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으로 한다.

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6조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9조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5호가목 중 “문화재·전통사찰”을 “국가유산·전통사찰”로 한다.

제44조제1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5조제4항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6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로,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한다.

별표 24 제2호다목(2) 중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을 “국가유산의 복원과 국가유산관리용”으로 한다.

⑮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⑯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루목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⑰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수리

⑱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⑲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1)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국가등록문화재(이하 “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이하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란 (3) 중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하며, 같은 란 나목 단서 중 “문화재는”을 “국가유산은”으로 하고, 같은 란 (2) 중 “문화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재”를 “국가유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2 제1항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물 또는 공작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
차. 국가유산의 복원과 국가유산관리용 건축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문화유산에 한정한다.

별표 3 제3호가목(1)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는”을 “국가유산은”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문화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재”를 “국가유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가유산”으로 한다.

⑳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존대책”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대책”으로 한다.

㉑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㉒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8조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㉓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㉔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3제1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30호 중 “산업단지문화재”를 “산업단지국가유산”으로 한다.

㉖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㉓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호 중 “문화재보호”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호”로 한다.

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가유산조사비

제44조의5제2항제1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4조의9제2항제6호 중 “문화재조사비”를 “국가유산조사비”로 한다.

제45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존”을 “국가유산보존”으로 한다.

㉕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국가유산의 보존·정비 및 활용시설

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호계획

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더목1) 중 “문화재관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관리”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국가유산의 복원

㉖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㉗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호의 기본방향

제1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보호계획

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보호계획

㉟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의 학예연구의 학예일반의 연구관·연구사란 중 “문화재관리학”을 “국가유산관리학”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학예연구의 학예일반의 연구사의 경채·전직의 제2차란 중 “문화재관리학”을 “국가유산관리학”으로 한다.

㊱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㊲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복원용”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

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복원용”으로 한다.

㉞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1 문화경관 기준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㉟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비고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안전기준의 범위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문화재청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유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명승으로서 문화재청장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가유산
------	---

④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중 “문화재보호”를 “국가유산보호”로 한다.

④②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④③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④④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3. 「국가유산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④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1 제9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④⑥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문화재연구원의 직무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④⑦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④⑧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4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④⑨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재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8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8호 중 “문화재조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조사”로 한다.

㉒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호계획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32조제8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200	300	400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국가유산정책기획단	
연 락 처	(042) 481 - 3191